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01. 23.

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포상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동군의회 포상의 공정성 및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나. 외부위원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 다.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9항, 제10항)
- 라.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마. 포상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star020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할 수 있으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종전의 13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 적 심 사 의 결 서				
포 상 대 상 자				훈 격
소속(주소)	직위(직급)	성 명		
심의일자			심의장소	
심의안건				
내 용				
직 위	성 명	찬 · 반	날 인	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하동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행정위원장 2. 산업건설위원장 3. 윤리특별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p><신 설></p> <p>③ ~ ⑤ (생략)</p>	<p>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p> <p>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⑥ 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신설>

⑦ -----
-----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실시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삭 제>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대상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5호서식(공적심사의결서)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제15조(종전의 제13조)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별지5호서식(공적심사의결서)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결함.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
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경우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